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

주체 94(2005)년 11 월 9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68 호로 채택

제 1 장 기상법의 기본

제 1 조 (기상법의 사명)
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상법은 기상관측과 예보, 기상시설의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상사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.

제 2 조 (기상사업의 본질과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)

기상사업은 대기현상을 체계적으로 조사, 연구하여 기상정보를 얻어내며 그것을 예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.

국가는 기상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기상사업을 현대화, 과학화하도록 한다.

제 3 조 (기상관측원칙)

기상관측을 바로하는것은 기상정보의 과학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.

국가는 기상관측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.

제 4 조 (기상예보원칙)

기상예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여러가지 기상정보에 의거하여 예견되는 기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, 평가, 발표하는 사업이다.

국가는 기상예보의 과학성을 보장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상예보를 하도록 한다.

제 5 조 (기상시설의 관리원칙)

기상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하는것은 기상시설의 파손을 막고 기

상관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.

국가는 기상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며 그 가동을 정확히 보장하도록 한다.

제 6 조 (기상과학연구와 인재양성원칙)

국가는 기상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상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,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.

제 7 조 (기상분야의 교류와 협조)

국가는 기상분야에서 다른 나라,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.

제 2 장 기상관측

제 8 조 (기상관측의 정의와 구분)

기상관측은 날씨와 대기변화과정을 련속 감시하고 측정하여 기상사업의 기초자료를 얻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다.

기상관측은 관측위치에 따라 지면기상관측, 고층기상관측, 해상기상관측 같은것으로 구분한다.

제 9 조 (기상관측을 할수 있는 기관)

기상관측은 기상관측기관이 한다. 그러나 과학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관측은 해당 기관, 기업소, 단체가 할수 있다.

제 10 조 (기상관측장의 선정과 승인)

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장을 해당 지역의 기상상태를 대표하며 기상관측에 지장을 주는 건물, 전기와 통신시설 같은 장애물과 하천수역으로부터 떨어진 개활지대에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1 조 (기상관측방법)

기상관측기관은 기상요소와 기상현상을 정확히 관측하여야 한다.

기상요소에 대한 관측은 관측기재로,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은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한다.

제 12 조 (기상관측자료의 기록)

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을 중단하거나 결측하지 말며 관측한 자료를 제때에 기록하여야 한다.

기록은 직접 관측한 자료에 대해서만 한다.

제 13 조 (기상전보문, 월보, 년보의 작성)

기상관측기관은 기상관측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전보문, 기상월보, 기상년보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작성한 기상전보문은 정한 시간에, 기상월보와 년보는 정한 기일안으로 해당 상급기관에 보내야 한다.

제 14 조 (기상월보, 년보의 심사, 보존)

중앙기상자료심사기관은 기상월보와 년보의 심사에서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기상월보와 년보는 영구보존한다.

제 15 조 (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의 설정)

국가는 기상관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관측장의 일정한 지역을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으로 정한다.

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.

제 16 조 (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사항)

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보호구역안에서 기상관측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열, 고주파복사장치와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제 3 장 기상예보

제 17 조 (기상예보의 중요요구와 구분)

기상예보를 과학성있게 하는것은 예견되는 날씨조건에 대처하여 사전대책을 세울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.

기상예보는 날씨의 예견기간에 따라 초단기예보, 단기예보, 중기예보, 장기예보로 구분한다.

제 18 조 (기상예보자료의 작성)

기상예보기관은 정기기상관측자료와 기상통신망으로 받는 기상정보에 기초하여 과학성있는 기상예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.

기상예보자료는 대기운동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.

제 19 조 (기상예보의 기관)

기상예보는 중앙기상예보기관과 지방기상예보기관이 한다.

중앙기상예보기관은 전반적지역의 기상예보를, 지방기상예보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상예보를 한다.

제 20 조 (기상예보의 통보)

기상예보의 통보는 방송보도기관이 한다.

방송보도기관은 기상예보를 접수하면 제때에 TV와 소리방송으로 보도하여야 한다.

필요에 따라 신문을 통하여 기상예보를 낼수도 있다.

제 21 조 (재해성기상경보)

기상예보기관은 폭우와 센바람, 태풍, 우박, 황사, 산불, 해일, 한파 같은 기상현상이 예견될 경우 제때에 재해성기상경보를 하여야 한다.

방송보도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신속정확히 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기상재해의 방지)

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재해성기상경보를 받으면 즉시 재해방지조치를 취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극력 줄여야 한다.

보험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재해조사와 평가에 해당 시기의 기상자료를 리용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기상정보의 봉사)

기상정보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은 기상기관에 의뢰하여 기상정보봉사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기상정보봉사료금을 내야 한다.

기상정보봉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.

제 24 조 (기상과학지식보급)

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들속에 날씨, 기후특징과 태풍, 해일, 황사 같은 재해성기상현상과 피해방지대책 같은것을 알려주어야 한다.

제 25 조 (기후자료의 조사, 평가와 통보)

기상기관은 기후자료에 대한 종합적조사와 평가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.

평가된 기후자료로 기후통보를 낸다.

제 26 조 (비법적인 기상자료의 리용금지)

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은 살림집, 시설물건설과 자원개발, 기상재해, 대기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상자료를 마음대로 만들어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.

제 4 장 기상시설의 관리

제 27 조 (기상시설의 구분)

기상시설은 기상관측과 예보, 기상자료처리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.

기상시설에는 기상관측장과 기상측정수단, 기상위성 및 레이다설비, 통신설비 같은것이 속한다.

제 28 조 (기상시설의 관리기관)

기상시설의 관리는 해당 기상기관이 한다.

해당 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29 조 (기상시설의 등록과 검정, 보수)

기상기관은 기상시설을 등록하고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불비한것은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.

해당 기관이 의뢰하는 기상측정수단도 검정하여야 한다.

제 30 조 (기상관측장의 위치변경금지)

기상관측장의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.

중요대상건설계획에 따라 기상관측장을 불가피하게 옮기려는 기관, 기업소, 단체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상관측장과 필요한 건물을 건설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보호)

기관, 기업소, 단체와 공민은 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.

기상관측환경과 기상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상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.

제 5 장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

제 32 조 (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)

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기상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.

국가는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.

제 33 조 (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기관)

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상지도기관이 한다.

중앙기상지도기관은 기상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34 조 (과학기술적지도)

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상관측과 예보, 기상자료심사와 보존, 기상시설의 리용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35 조 (기상관측, 예보일군의 자격)

기상관측, 예보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.

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자는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할수 없다.

제 36 조 (기상측정수단생산과 전력, 통신의 보장)

국가계획기관과 중앙기상지도기관, 해당 기관은 기상측정수단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필요한 측정수단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.

체신기관과 전력공급기관은 기상부문사업에 필요한 통신과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37 조 (감독통제)

기상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.

중앙기상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.

제 38 조 (벌금, 손해보상)

기상관측과 재해성기상예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거나 재해성기상경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거나 기상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.

제 39 조 (원상복구)

승인없이 기상관측장을 옮겼거나 없애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.

제 40 조 (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)

이 법을 어겨 기상부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, 기업소,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.